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66호)

2026. 8.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3
2. 출석요구 대상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포함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재옥 · 김선교 · 김 건 · 김상훈 · 백종현 · 박충권
안철수 · 박수민 · 이주영 · 서천호 · 박형수 · 안상훈
한기호 · 엄태영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6. 6. 24.

3. 회 부 일 : 2026. 7. 1.

※ 의안번호 : 1946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선 투표소의 투표용지
고갈 등 선거 관리 혼선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음.

현행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국회는 관행적으로
중앙선관위 본부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일선 현장의 각급 선관위는 감시 사각지대에 위치해 왔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부를 수 있도록 추가하고 행정안전위
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선 선거 현장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9호다목 및 제121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9호다목).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행정안전위원회 가.·나. (생략) 다.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생략) 10. ~ 17. (생략) ② (생략)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u> ----- ----- 라. (현행과 같음) 10.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는 한편, 「정부조직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당 위원회의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

시함.¹⁾ 따라서 「국회법」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안전
심사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을 정
하는 기준으로 기능함.

현행법 제37제1항제9호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
법²⁾ 및 「선거관리위원회법」³⁾에 따라 설치되는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에도 특별시·광역시·도, 구·시·군, 읍·면·동 단위
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므로, 이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
무가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에 해당하는지 문언상 불명확하다는 의견
이 있고,

특히 행정안전위원회가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거관리위
원회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채택함에 따라,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⑥ (생략)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4) 행정안전위원회의 연도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참조.

위원회의 소관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의 실시 대상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일선 선거관리의 혼선을 계기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혁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상황에서,⁵⁾ 선거관리 사무 수행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법상으로도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3항⁶⁾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무 수행에 있어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한 관리가 포함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함.⁷⁾ 실제로 행정안전위원회는

5) 국회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7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 중임.

6)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국정감사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처리를 요구하여 왔음.

[표-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국정감사 주요 내용(제21대국회)

연도	주요 내용
2023	○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독점적 인사 운용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국정감사결과보고서 p.123)
2021	○ 중앙,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공정성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국정감사결과보고서 p.31) ○ 지방자치단체의 유튜브 운영에 관한 운용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별 통일적인 법 적용·해석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할 것(국정감사결과보고서 p.169)
2020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성별, 연령별, 직업별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국정감사결과보고서 p.40)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거법 질의에 회답하도록 하고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사항과 선거법 판례, 지역별 질의 예시를 총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일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국정감사결과보고서 p.217)

자료: 연도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다만, 현재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이 포함되고 이에 따라 감사 및 증인 채택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의 해석상 이

제3조제3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통할·관리 및 지휘·감독하므로 현행 법상으로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역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견을 해소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대상 기관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답변에 의존하던 간접 통제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헌법 제114조의 용례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개정안의 문언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더 간명한 방안이라고 보이고,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8) 의안번호 제2209472호, 배준영의원 대표발의(2025.3.28.)

2. 출석요구 대상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포함

현행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출석요구 대상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5항).

[표-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 ④ (생략)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u>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u> ,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u> ----- -----. -----.

현행법 제121조에 따라 본회의 및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나 현안에 대해 질문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해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⁹⁾ 특정한

9)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출석요구는 국회가 행정부 및 각 헌법기관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선거관리 사무 전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도 국회의 출석요구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121조에 따른 국회의 출석요구 대상은 ① 헌법상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¹⁰⁾가 부여된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제1항·제2항)과, ② 헌법기관의 장인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제5항)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제5항에 따른 대상은 국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 등과 달리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의 장으로서, 그 독립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정보 획득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한정적으로 규정된 것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대한민국헌법」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는 것은, 열거된 다른 기관과의 규범적 층위에 비추어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

둘째, 현행법상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 관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소속 직원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여¹¹⁾ 출석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고,¹²⁾ 개정안에 따라 출석요구 대상으로 명시하더라도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차적 편의성 차원의 실익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

11) 「국회법」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출석하여 직접 답변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